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3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김형재 의원외 15명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형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족”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으로, “의식 함양”을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해 정비함(안 제4조제3항, 안 제5조)

다.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7호)

라.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김형재 의원외 15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353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부터 「통일교육 지원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정 시행하였으며, 동 법령은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과정 개설과 국민의 통일적 의지를 높이기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체 및 서울학생통일관운영 지원 등의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 실시 현황(2021~2023년)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2021	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통일캠프(가족·사제동행)
	통일교육협의체운영	남북교육교류협의체 운영, 평화통일교육현장지원단 운영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서울학생통일관 운영지원(학생 통일 체험관)
	평화통일교육교원전문성제고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학교 평화통일축제 지원	통일주간 학교통일교육 체험자료 지원(44교) 교실로 온(O) 평화통일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체험, 토론, 강의, 리더 역량 함양(10회)
	평화통일교육 전문역량강화	핵심리더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2022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함께 가는 평화의 길, 평화통일캠프 운영(가족·사제동행)
	남북교육교류협의체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지원
	통일교육협의체운영	현장지원단 운영, 평화통일캠프 참가교 심사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서울학생통일관 운영지원(학생 통일 체험관)
	학교 평화통일축제 지원	통일교육주간 학교통일교육 체험자료 지원(87교)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체험, 토론, 강의, 리더 역량 함양(10회)
	평화통일교육 전문역량강화	핵심리더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2023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서울학생통일관 운영지원(학생 통일 체험관)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초·중·고 50팀 선정, 학생 참여활동중심 통일안보 견학 프로그램 운영(11월말 최종집행예정)

※ 제출처: 서울시교육청(특교사업 제외, 2023.10. 기준)

- 그러나 동 조례 제정 당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¹⁾
-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교육감에게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 교육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관련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기본이념 및 시행계획 수립, 학교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5조, 제6조제1항, 제14조)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2조는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기본 이념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 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⑤ (생략)

- 이러한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²⁾
-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14조는 학교장의 책무와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 역량을 강화 부문에 규정된 “평화·통일교육”을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법적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2)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제3항)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교육감이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있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전면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³⁾ 건전한 안보관에 기초한 평화통일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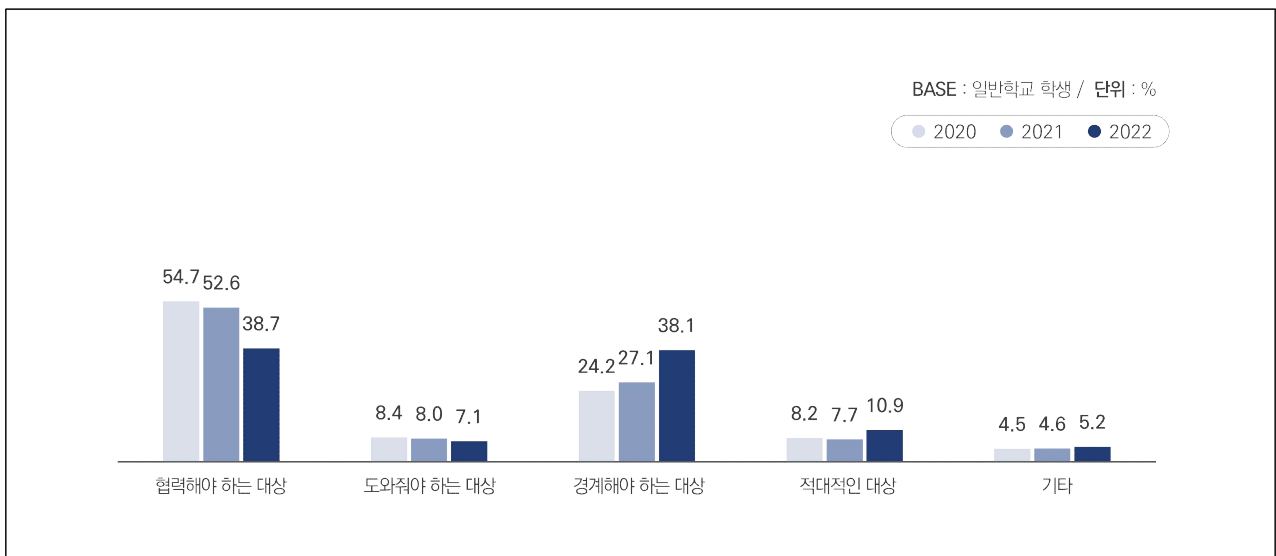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3) 국방부 “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 필요…군사작전 제한”, 연합뉴스, 2023.11.30.

-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기보다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남북간 긴장완화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균형있고 내실 있는 평화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세대에 부응한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⁴⁾

[그림-1]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주요 내용(교육부)

- 질문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나요?”



* 조사대상: 초·중·고 734개교, 총 70,869명

* 조사기간: 2022.10.18.~11.22.(온라인조사)

4)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p.2, 2023.2.17.

3)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안 제6조제2항 및 제15조)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7호는 통일교육계획에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통일교육주간’로 평화·통일교육 관련 대토론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신설 조항들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참여·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교육주간의 내실있는 운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통일교육주간 운영 계획(2023년)

- (목적) 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통일·안보 실천 역량 함양
- (기간) 2023. 5. 22.(월) ~ 5. 26.(금) (매년 5월 넷째 주)
- (대상) 초·중·고 전체
- (주요내용) △학교 맞춤형 계획 수립 및 학교장 내부결재 후 실시
△통일을 주제로 한 학생 참여·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 권장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 2023.10.27.).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민족”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으로, “의식 함양”을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평화·통일교육”을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평화·통일교육을”을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제14조제1항 중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역량”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예산 등 지원) ①·② (생략)	제15조(예산 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제2조(기본이념) ----- ----- ----- ----- ----- -----.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② (생략)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

-----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

-----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역량-----.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교
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
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토론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
시할 수 있다.

제15조 ~ 제18조 (생 략)

제16조 ~ 제19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